

윤리경영연구 편집방침

개정일: 2019년 4월 5일

윤리경영연구의 임무는 기업윤리에 관련된 학술적 및 실무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학술지는 구체적으로 (1) 기업윤리와 관련된 학술연구(개념적 또는 경험적 연구), (2) 윤리경영 우수기업의 사례연구, (3) 기업윤리 관련 교육용 사례, (4) 기업윤리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 (5) 기타 관련 연구를 게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윤리경영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논문이라면 누구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가 확정되면 모든 저자(주저자와 공동저자 포함함, 다만, 초청된 기고자나 외국인 저자는 예외로 함)는 학술지가 발간되기 이전에 학회가입 절차를 밟아 회원이 되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발간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 그리고 현재 다른 발간물에 투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3. 윤리경영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 논문투고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이나 학술지 발간 이후에 표절 또는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주장되거나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논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심사중단, 게재거부와 게재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윤리검증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갖는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에 모든 저자는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5. 투고논문의 심사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20만원이며(단, 사사가 포함된 논문은 30만원), 저자는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로 정한다.
8. 투고논문의 심사과정과 게재여부 판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윤리경영연구 논문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요령에 맞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와 동시에 편

- 집위원들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함)으로 진행한다.
 - (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제한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 뒤 심사위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 (5) 두 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두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두 명의 심사위원이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이 서로 다른 경우, 즉 한 심사위원은 게재가로 판정하고 다른 심사위원은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로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최초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와 수정 후 재심으로 갈린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 (6)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최초 심사의원이 맡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이상의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후 재심 판정을 제외하고 무수정 게재, 게재가능(수정 후 바로),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7) 게재가능(수정 후 바로) 판정의 경우(기존의 '수정 후 게재'와 동일한 판정임)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충실하게 논문이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여부 결정을 내린다.
 - (8) 학술지 편집의 책임을 맡은 편집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수정요구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9) 논문의 수정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2개월을 경과한 경우 투고자의 의사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논문철회로 간주한다.
 - (10)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절 검증 절차를 운영한다.
9. 논문의 심사기준 및 게재여부 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적합성(연구 주제가 윤리경영과 관련되어 있는가?)
 - (2) 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학계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한가?)
 - (3) 연구내용의 창의성(연구의 이론적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가?)
 - (4) 연구방법의 타당성(연구 방법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가?)

- (5) 효과적인 의사전달(논문이 체계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는가?)
10. 논문게재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순서를 따른다. 단,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1.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행한다.
 12. 윤리경영연구는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에 2회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13. 본 방침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고, 그 내용을 즉각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14.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윤리경영연구 투고 요령

- <윤리경영연구>는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에 2회 발간됩니다.
- 별도의 원고 마감일은 없으며, 윤리경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논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확정된 논문은 게재확정순서에 따라 윤리경영연구에 게재됩니다.
- 논문을 제출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https://kaobe.jams.or.kr/>

1. 논문투고자는 윤리경영연구의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kaobe.jams.or.kr/>)에 로그인하여 논문을 제출한다.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시 연구윤리서약에 동의를 해야 한다.
2.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3. 원고는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4. 원고는 한글2005 이상 혹은 MS WORD로 A4 용지에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위·아래 여백 20, 왼쪽·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20, 줄간격 160, 큰제목 크기 18, 본문글자 크기 10, 1페이지 분량 39행으로 20매 내외로 한다.
5.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식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논문제출시 먼저 투고논문 정보(제목, 키워드, 초록, 영문제목, 영문키워드, 평문초록, 페이지수 등)를 작성하고, 투고논문은 투고자들의 개인정보(투고자의 소속, 이름, 연락처 등)를 삭제한 후 첨부한다. 그리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고, 저작권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첨부한다.
7.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초록은 포괄성(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함), 정확성(내용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함), 표현의 적절성(적절한 용어와 표현을 활용해야 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길이는 1매 내외로 하며, 초록 하단에는 주제어(key word)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8.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9. 모든 표와 그림은 선명하게 작성해야 하며 해당번호(예: <표1>, <그림3>)와 제목 또는 설

- 명을 붙여야 한다.
10. 각주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되,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며 그 내용은 각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11. 논문 목차의 장, 절, 항의 구분은 장의 경우 I, II, III으로, 절의 경우1, 2, 3으로, 그리고 항의 경우 (1), (2), (3)으로 표시한다.
 12.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문헌, 외국어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문문헌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13.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한다(예: Carroll(1999) 혹은(이종영, 2005)), 또한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를 함께 기재한다(예: Victor & Cullen, 1988, 105). 공동연구의 경우 저자가 2명 이내인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을 다 표기하고3명 이상의 경우에는 첫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그 뒤에 여러 명의 공동저자가 있음을 표기한다(예: Verbeke et al., 1996) 혹은 (박헌준 등, 2004)).
 14. 참고문헌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이름(국내문헌의 경우 꺾쇠(「 」)안에,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이름, 연도, 도서이름(국내문헌의 경우 꺾쇠(「 」)안에,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이름의 순으로 기재한다.

(보기)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 기업과 사회』, 경문사.

박헌준(2002),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 『새로운 경쟁력, 기업의 사회적 성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편, 286-318, 예영커뮤니케이션.

고승희(2002), “일본의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윤리경영연구』, 4, 87-112.

Bartels, L. K., Harrick, E., Martell, K. and Strickland, D.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climate and ethical problems within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 799-804.

Donaldson, T., and Preston, L. (1995), “The stakeholder theory of the corporation: Concept, evidence, and implic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65-91.

Gunthorpe, D. L. (1997), “Business ethic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unethical behavior by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5, 537-543.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8년 2월 2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위원회 구성, 논문 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윤리경영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윤리경영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 ③ 윤리경영연구의 편집방침, 투고요령,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제정한다.
- ④ 기타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10년 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의 학술지에 10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기업에서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의 학술지에 4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대학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임명) ① 학회장은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현임 편집위원장의 임기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학회장, 차기 학회장, 직전 학회장,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추천한 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현 편집위원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편집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제6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① 편집위원은 인사조직, 생산운영, 마케팅, 재무, 회계, 경영정보 등 경영학의 세부 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광주, 제주, 해외 등 9개 지역 중 최소 5개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학회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7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 및 투고요령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 간의 심사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게재 및 재심사여부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 등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④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⑤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 후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제10조(회의) ① 편집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관련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한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의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윤리경영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윤리경영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2018. 2. 21 제정)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윤리경영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년 3월 15일

제1절 용어의 정의

제1조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변조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표절

[표절]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말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 최초의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

제4조 이중게재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자기표절·짜깁기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이차게재의 경우는 반드시 기존 출판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차게재임을 명시해야한다.

제5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기타 학문 연구에 있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윤리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제2절 연구윤리규정: 연구자

제7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 (1) 투고된 논문의 저자는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혹은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적이어야 하며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 (2)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타인 및 본인의 연구 과정 또는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연구물의 이중 게재 및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9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10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 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절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절 연구윤리규정: 심사위원

제15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7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절 연구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20조 한국윤리경영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학회 조직구성

고문 (역대회장)	고승희(단국대), 김성수(경희대), 김정원(강원대), 박경규(서강대), 박기찬(인하대), 박오수(서울대), 박원우(서울대), 백기복(국민대), 유규창(한양대), 이영면(동국대), 장영철(경희대), 주인기(연세대)
회장	박우성(경희대)
감사	성상현(동국대), 정원호(국방대)
부회장	강영순(제주대), 김경수(전남대), 김영조(부경대), 김종인(건국대), 김효선(중앙대), 남영호(건국대), 박노윤(성신여대), 박상언(충북대), 박종성(숙명여대), 서용원(성균관대), 서재현(경기대), 성상현(동국대), 이호영(연세대), 양동훈(서강대), 조봉순(서강대)
산학협력 부회장	강태영(POSCO), 김기령(풀무원), 김상현(HLDS), 김정래(CCSR), 신왕건(CFA협회), 양세영(윤리경영원), 양춘승(KoSIF), 이상범(법무법인백상), 이용각(이노크루), 이재권(인덕회계법인), 정권택(SERI), 정현천(SK사회공헌위원회), 조한제(대한제지)
상임이사	곽원준(숭실대), 구자숙(경희대), 권기욱(건국대), 권성우(고려대), 권종욱(강원대), 김민수(한양대), 김봉진(이화여대), 김상수(용인대), 김정훈(제주대), 김찬승(충북대), 김태동(차의과대), 노한균(국민대), 류성민(경기대), 류수영(충남대), 문재승(대전대), 변혜영(강원대), 윤동열(울산대), 윤석화(서울대), 이덕로(서원대), 이돈희(인하대), 이동섭(고려대), 이영석(ORP연구소), 이주현(연세대), 이춘우(서울시립대), 장영균(서강대), 조윤희(조선대), 조창훈(서강대), 차윤석(동아대), 최우재(청주대)
이사	강승원(가천대), 강윤식(강원대), 권순백(대구카톨릭대), 권순원(숙명여대), 김광현(고려대), 김기태(상명대), 김보영(국민대), 김성식(이에스이하모니), 김성환(광운대), 김억환(차의과대), 김영준(한국외대), 김태현(카이스트), 김태형(안동대), 김학수(충북대), 김해룡(울산대), 김현정(인하대), 노동래(GCF), 노상충(캐럿글로벌), 명순영(매경이코노미), 문정빈(고려대), 박근완(한양대), 박상언(텍스홈아웃), 박상연(배재대), 박성중(안양대), 백윤정(경북대), 설현도(단국대), 손승연(국방대), 심선아(재능대), 안성희(가톨릭대), 양대규(경희대), 오명전(숙명여대), 이기은(대구대), 이문영(덕성여대), 이상명(한양대), 이수정(인하대), 이승윤(홍익대), 이아영(강원대), 이영한(서울시립대), 이준서(동국대), 이준우(한밭대), 임상균(국민대), 임상훈(한양대), 임성원(한덕경영연구소), 정진경(CNC연구소), 정혜정(건국대), 채수준(강원대), 천장현(머서코리아), 최종인(한밭대), 황문호(경희대)
상임위원장	편집위원장: 김영조(부경대) 윤리경영대상심사위원장: 백기복(국민대) 학술위원장: 장영균(서강대) 산학협력위원장: 김기령(풀무원) 학계협력위원장: 김태동(차의과대) 기업윤리교육위원장: 조창훈(숭실대) 사무국장: 구자숙(경희대)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	한글 영문
소 속 단 체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전화 : 핸드폰 : e-mail :

본인은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 (인)

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다음의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구 분	내 역	회 비	체크해주세요
일반회원	영구회원비	10 만원	
	연회비	2 만원	

※ 참고: 영구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입금구좌> 우리은행 1005-801-065622

예금주 : (사) 한국윤리경영학회

<주 소> (02447)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오비스홀 618호

<연락처> Tel: 010-5665-7747 (사무간사)

E-mail: kabethics@gmail.com

※ 기타 문의사항은 위의 한국윤리경영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 김 영 조 [부경대]

편집위원 : 구 자 숙 [경희대, 인사조직]

김 성 환 [경북대, 재무]

김 지 대 [충북대, 생산/OR]

김 태 동 [차의과학대, 회계]

남 윤 성 [동아대, 경영전략]

석 진 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사조직]

오 원 용 [Univ of Nevada, Las Vegas, 경영전략]

오 창 규 [경남대, MIS]

윤 현 식 [전남대, MIS]

이 영 면 [동국대, 노사/인사조직]

이 창 민 [한양대, 국제경영/재무]

장 수 덕 [한남대, 중소/벤처기업]

조 봉 순 [서강대, 인사조직]

김 선 혁 [고려대, 인사조직]

김 종 배 [성신여대, 마케팅]

김 지 현 [연세대, 경영전략]

김 태 현 [KAIST, 조직이론]

방 호 진 [제주대, 인사조직]

신 인 용 [부경대, 인사조직]

오 한 모 [전북대, 국제경영]

이 아 영 [강원대, 회계]

이 준 구 [한양대, 국제경영]

임 승 희 [수원대, 마케팅]

장 영 균 [서강대, 윤리경영]

홍 관 수 [계명대, 생산/OR]

윤리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인쇄

2019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 박 우 성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학회

TEL : [02] 961-2151

제작처 : CFO아카데미 대표이사 전병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37 아이네트빌딩 5층

전화 : (02) 501-2322

E-mail : jbm@naver.com

<비매품>